

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농촌지도자의 교육, 훈련,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규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정액표 제4호"를 "제3호"로 개정

현지교통비 : 갑지 4,500원, 을지 4,000원, 숙박료 : 갑지 14,000 원, 을지 11,500 원, 식비 : 갑지 10,500 원, 을지 9,000 원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능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능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'제4호에' 를 '제3호에'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
제3조(실비변상) 농촌지도자의 교육, 훈련,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외 비규정 별표 2 정액표의 <u>제4호</u> 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.		제3조(실비변상) - - - - -	
		- - - - -	
		- - - - -	
		- - - - - 제3호에 - - - - -	
		- - - - -	